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의무 예외 규정 마련〉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6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07. 03.
3. 회부연월 일 : 2025. 07.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 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 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illegible]

현행	개정안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u>아동보호전문기관</u>은 제외한다) 바. ~ 차. (생략)	마. ----- -----<u>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u> 는----- 바. ~ 차.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마목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¹⁾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학대피해아동쉼터²⁾’를 추가로 제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³⁾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합시설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⁴⁾는 동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중 피해아동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아동복지법 제46조)으로 아동을 직접 시설에 상주시켜 양육하기보다는 사례관리·학대 개입·상담 지원 중심의 기관임. 전국 총 102개소 설치·운영 중(25.7.기준)

2)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곳(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또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특정 유형임. 전국 총 153개소 설치·운영 중이며 수용정원은 8명 미만임.

3)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시설임.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⁵⁾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정지표시장치 설치, 표시등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⁶⁾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계	아동복지시설 ¹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767 (1.9%)	36,600	19,822	47,774	14,300	1,857	20,377	427	666	
145,448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늘봄센터
	139	13	3	35	12	30	34	262	279	51

주1: 아동복지시설 단위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 등 상세 검색은 불가하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153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정원은 8명 미만임.

※ 자료 : 경찰청

5) 「도로교통법」 제52조

① ~ ② 생략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는 것

6) 구체적인 기준은 본 보고서의 <보조자료> 참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장치>



통학버스 전체 사진



어린이보호표지(앞·뒤)

표시등(적-황, 황-적)



광각실외후사경

보조 발판

정지 표시장치



하차확인장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위치와 운영 현황이 비공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황색도색, 표시등 설치, '어린이보호' 표시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아동관련 시설임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 시설의 비공개성 원칙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적인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정기적인 통학보다는 병원 내원, 상담 등 비정기적 이동이 주를 이루므로 통학버스 운영의 실효성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안전 간 균형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학대피해아동의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이 갖는 실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표시등, 하차확인장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학대피해아동 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전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

둘째,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위험 상황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교통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과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를 아동복지시설로 확대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셋째,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외부에 운영시설의 명칭을 표기할 의무가 없어 어린이통학버스만으로는 시설을 특정하기 어렵고, 승하차 지점을 쉼터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보호가 가능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설명 표기 의무 부재, △승하차 지점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

7) 2020. 5. 26.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태호·유찬이법)은 2019. 5.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하여 초등학교 1학년 태호와 유찬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됨.

당시 사고 차량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축구클럽에서 사용되던 차량이었던 관계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차량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한 당시 법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교육·보호하는 시설이라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하여 기존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적용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 함

<참고자료>: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장치 관련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조 문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2조(정의) 24호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자동차 차체 또는 좌석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제2조(정의) 32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체육시설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
§19 ⑧	황색 도색	- 통학버스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19 ⑨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19 ⑩	정지표시장치(*14.221.)	좌측 옆면 앞부분 정지표시장치 설치
§25 ②	승객좌석의 규격	가로·세로 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 46센티미터 이상
§25의2	접이식좌석	30인승 이상 승합차에 설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함
§27 ⑥	좌석안전띠장치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29조 ④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48조 ④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50 ③④	간접시계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운전자가 교통상황 확인 가능하게 설치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53의2	후방카메라 후방경고음 설치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53의4	하차확인장치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는 구조 등
§94 ③	운전자의 시계범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에서 어린이통학버스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